



목회자 납세(신고·환급) 설명회

목회자 납세, 이렇게 돋겠습니다



2008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명동 청어람 3실(4호선 명동역 3번출구)

대상 세금 신고에 관심있는 목회자 및 재정담당자

주관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주최 건강한교회재정학립네트워크 www.cfnet.kr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후원 뉴스앤조이, 성서한국



진, 행, 순, 서,

사례 소개 안해용 목사

너머서교회

세무신고에 관한 안내 최호윤 회계사

제일회계법인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정운형 국장

교회개혁실천연대

1:1 세금 신고 지원 안내

목, 차,

추지 4 p

세무신고에 관한 안내 5 p

별첨 14 p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관련세법규정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소개 22 p

■ 취지

그간 목회자 납세에 대한 논쟁은 기독교계 안팎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간 방송사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올 초부터 관련 토론과 세미나가 이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회자도 납세의 주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더욱이 납세를 원하는 목회자들조차 세정당국의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적법한 세금납부에 혼선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영리회계 및 경영전문가들이 투명한 교회재정에 앞장서려는 목회자들과 함께 세무와 회계, 법무와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전문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계기로 마련된 이번 '목회자납세(신고·환급)설명회'는 한국교회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저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어촌이나 도시 빈민지역의 목회자 가정도 적법한 신고절차(소득 증빙)만 밟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출산도우미 파견, 영유아보육비 지원, 초등학교방과후교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약칭 재정네트워크)는 지난 2005년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네 개의 단체(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교육과 연구 및 관련 협력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목회자 분들의 납세 경험을 사회와 교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설명회 이후에도 상설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를 도울 예정입니다. 깨어있는 목회자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 신청 및 상담 안내

- 문의: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실장 T. 02-741-2793(F. 02-741-2794)
나눔과샘 김소희 대리 · 주미영 02-565-5886(F. 0505-567-0691)
- E-mail: happytax@cfnet.kr(재정네트워크), protest@protest2002.org(교회개혁실천연대)
- Website: www.cfnet.kr(재정네트워크), www.protest2002.org(교회개혁실천연대)

■ 세무신고에 관한 안내 ■

1. 고유번호(세적) 등록

가) 의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세무서가 관리하는 번호이며 고유번호 (또는 수의사업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나) 고유번호 구성

① 체계(10자리)

OOO(최초 등록 관할세무서) OO(종류) OOOOO(일련번호)

② 종류의 구분

- a. 82 : 비영리법인
- b. 89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 c. 81, 85, 86 : 영리법인의 본 지점

다) 근거 규정

① 국세기본법 제13조(17 page 참조)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9조(18 page 참조)

라) 제출 서류

① 교단소속 교회의 경우

- a.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승인신청서 [법정양식]
- b. 교단 법인등기부 등본
- c. 교단소속확인서
- d. 정관 (또는 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재산이 개인과 구분되는 교회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교회의 재산(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e.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f.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법정양식]
- g. 임대차 계약서

② 소속교단이 없는 경우

- a.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승인신청서 [법정양식]
- b. 정관 (또는 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재산이 개인과 구분되는 교회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교회의 재산(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c.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d.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법정양식]
 - e. 임대차 계약서

마) 제출시 미리 준비할 정보

- ① 교회명칭 및 주소, 전화번호
- ② 교회 성립일
- ③ 담임 목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④ 재산상황 및 가액 (설립시점 / 고유번호 신청시점)
 - a. 현금
 - b. 예금
 - c. 차량
 - d. 전세보증금
 - e. 부동산
- ⑤ 연락 받을 이메일주소

바) 접수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창구

사) 처리 기한

제출일로부터 10일

아) 작성 사례

'별첨 1(14 page 참조)' 및 '별첨 2(15 page 참조)' 양식 참조

2 . (참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가) 의의

고유번호는 세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준이 되는 반면 법인으로서 법적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유번호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를 위하여서는 관할 구청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용도로만 사용되며, 법인 등록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要)

나) 근거 규정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18 page 참조)

다) 제출 서류

-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법정양식]
- ② 정관 또는 규약
-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1부

라) 접수처

주소지 관할 구청 도는 군청의 부동산정보과

3. 고유번호 등록의 효과

가) 증여세 비과세

교회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교회가 수령하는 현금은 증여세가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상증법 제 16조 및 48조, 시행령 제12조 1호(19 page 참조)

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① 요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항 1호 마목(20 page 참조)

② 교단소속 교회의 경우

법인으로 등기된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경우 현금을 낸 성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분류: 종교단체기부금)을 발급할 수 있으며, 성도들은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46013-2028. 98/7/21)

③ 독립교회

현행 규정으로는 등록할 곳이 없으므로 교회가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분류: 기타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46013-461. 98/2/23)

다) 부동산

①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1호(20 page 참조)

a. 고유번호 등록과는 상관없이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b. 제외

i. 구입 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ii. 구입 후 5년 이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보유세: 재산세

- a. 고유번호 등록과는 상관없이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 b. 제외
 - i.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ii.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 iii.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4. 근로소득의 요건 및 종류

가) 성격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38조, 20 page 참조)

- ① 기밀비, 교제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 실비정산 하지 않는 경우 소득으로 간주
- ② 본인의 학자금, 장학금 <- 소득으로 간주되나 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경우 금액범위 제한 없이 전액 소득공제 받음.
- ③ 자녀 학자금, 장학금
- ④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⑤ 담임교역자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⑥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 ① 부교역자 또는 사무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④ 교회가 부담하는 교회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⑤ 구내식당에서 제공 받는 식사
- ⑥ 식사를 제공 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⑦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액
- ⑧ 6세 이하의 자녀보육관련 월 10만원 이하 보조금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

가) 원천징수시기

매월 급여 지급시

나)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대상이 됨(소득세법 시행령 185조 2항, 21 page 참조)

② 신고방법: 우편접수 또는 국세청에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③ 시기

a. 월납: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b. 반기납

i. 대상요건: 상시 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반기별(6개월 단위)로 반기말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6개월분을 신고 및 납부

ii. 반기납을 원하는 경우 6/1~6/30, 12/1~12/31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다) 원천징수 방법

① 원천징수세액 결정

매월 소득 지급시 과세소득과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결정

② 원천징수 사례

a. 가족사항: 본인, 배우자, 자녀2명

b. 월 급여: 210만원(식대 1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0만원 포함)

c. 소득세액: _____ 원

d.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공제(원단위 절사)

e. 급여 총액(210만원)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6		7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1,880	1,890	25,950	21,280	11,480	9,980	8,480	6,980	5,480	3,980	2,480	980	0
1,890	1,900	26,390	21,720	11,750	10,250	8,750	7,250	5,750	4,250	2,750	1,250	0
1,900	1,910	26,820	22,160	12,020	10,520	9,020	7,520	6,020	4,520	3,020	1,520	20
1,910	1,920	27,260	22,590	12,290	10,790	9,290	7,790	6,290	4,790	3,290	1,790	290
1,920	1,930	27,700	23,030	12,570	11,070	9,570	8,070	6,570	5,070	3,570	2,070	570
1,930	1,940	28,130	23,470	12,840	11,340	9,840	8,340	6,840	5,340	3,840	2,340	840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별첨 양식 3 참조(16 page)

[별지 제기 후 서식] (2008.4.29. 개정) (1쪽)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귀속연월	2008년 6월
파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차분		③ 지급연월	2008년 6월
원 천 징 수 이무자	법인명(상호)	[내선서교호]		대표자(성명)	안 해 등	일관남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82-***		사업장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4-37	전화번호	904-2895

가) 신고구분

매월납부자인지 반기별납부승인자인지 선택

나) 귀속연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연월을 기재

다) 지급년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년월을 기재

라)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③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금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환급세액	⑧ 가산세				
근 도 소 특	간이세액	A01	1	2,000,000	9,02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기각계	A10	1	2,000,000	9,020			9,020		
	퇴직소득	A20								
자 연 소 특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기각계	A30								
기타소득		A40								
연 금 소 특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기각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자족하지 추경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물천		AB0								
수령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	2,000,000	9,020			9,020		

마) 소득지급 인원

과세미달,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을 기재

바) 소득지급 총지급액

과세미달,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하되 다음의 비과세항목은 제외함.

- ① 월 10만원 이하 식대
- ②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③ 교회부담분 사회보험료

사) 소득세 등 징수세액

당월 중 소득종류별로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단, 근로소득 중도퇴사(A02),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사업소득 연말정산(A26) 항목은 연도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해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입력합니다.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를 붙여 입력

아)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액을 입력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⑩+⑪)	⑫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⑬-⑭)	⑯ 차월 이월 환급세액 (⑮-⑯)	
⑬전월 미환급 세액	⑭기획금 전망세액	⑮차감잔액 (⑬-⑭)	⑯일반환급	⑰식탁재산 (음료기기판)	⑱기타				

자) 전월미환급세액

전월에 조정환급하지 못하고 당월로 이월된 환급세액을 입력

차) 조정대상환급세액

차감잔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7. 납부서

가) 국세청사이트 활용

- 국세청사이트(www.nts.go.kr)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활용

나) 수기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면)

(전자)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세					만			원
농어촌특별세								
계								
원족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지점								
수납인								

수납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 납부연월: [사례 2008.01 -> 0801]

- 납부구분

- 확정분자납(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 수시분자납(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원천분자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④ 세목: 사업소득세(13), 갑종근로소득세(14), 기타소득세(16), 퇴직소득세(21)

⑤ 수입징수기관서 및 계좌번호: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 계좌번호

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부기한, 귀속연도, 납부금액을 입력합니다.

8 . 연말정산

가) 의의

매월 급여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정확한 소득세가 아니라 임시로 징수한 금액이므로 년말에 일년간 소득과 본인의 공제상황을 고려한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

나) 시기

2월 급여지급시 정산조정(2008년분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다)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시면 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www.nts.go.kr

■ 별첨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 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단체의 명칭	너머서교회		③결성연월일	2008. 3. 23.
③주사무소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4-37		④전화번호	904-2895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안해용	⑥주민등록번호	**0127-*****
⑦주소 또는 거소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4-37		⑧전화번호	016-455-2895
사 업	⑨고유사업	기독교 선교활동		
	⑩수익사업			
단체의 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보증금, 예금, 비품		****,***	
합계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신청인 너머서교회(서명 또는 인) 담임목사 안해용				
고양서부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별지 제6호의 4 서식] (2001.3.31.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 단체	①명 칭	너머서 교회		②고유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4-37					
신 고 내 용							
④선임(변경)연월일		2008년 06월 20일					
⑤신고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최초선임 <input type="checkbox"/> 변경					
최 초 선 임 변 경 전 ~ 변 경 전	⑥성명	안해용	⑦주민등록번호	**0127-*****	⑧생년월일	***.1.27.	
	⑨주소 또는 거소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4-37					
변 경 후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생년월일		
	⑬주소 또는 거소						
<p>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2008년 6월 20일							
신고인 너머서교회 (서명 또는 인) 담임목사 안해용							
고양세무서장 귀하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차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2008년 6월	③지급연월 2008년 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너머서교회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성명)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4-37	안 해 용		일관남부 여부	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82-***					전화번호	904-2895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 분 근로 소득	고 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④당월 조정 관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⑤소득세 등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⑥기타세 특별세
		⑦인원	⑧증거금액	⑨소득세 등	⑩국어종 특별세	⑪기타세			
사 업 소 득	간이세액 A01	1	2,000,000	9,02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1	2,000,000	9,020				9,020	
퇴직소득 A20									
연 금 소 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 금 소 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경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	2,000,000	9,020				9,020	
2. 관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관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관급세액			⑫조정대상 관급세액 (⑬-⑭-⑮-⑯)	⑬당월 조정 관급세액계	⑭차별 이율 관급세액 (⑭-⑮)	
⑭전월 미관급세액	⑮기타관 급세액	⑯차감세액 (⑭-⑮)	⑭일반관급	⑮선택과목 (금융기관)	⑯기타				
<p>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p> <p>2008년 7월 10일 원천징수의무자 너머서교회 (서명 또는 인)</p> <p>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히하고 풍경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고양 세무서장 귀하</p>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작성하였음 ()									
<input type="checkbox"/> 작성대상 아님 (○)									
세무대리인									
<input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 주소			bhg**@hanmail.net						

4. 관련세법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 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1997.2.22>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2002.2.9>
- ④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리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소개

○ 활동 연혁

2005.8.18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단체 구성 및 1차 회의
2005.12 ~	개교회 예·결산보고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실시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2006.2.	교회 재정관리규칙 제정위원회 구성(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2006.4.24	교회 재정의 건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기윤실 주관)
2006.5.11.	재정담당자·목회자 대상의 내부간담회 개최
2006.5 ~	재정규칙 초안 제정작업
2006.8.10.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2006.12.1.	재정세미나 개최(바른교회아카데미 주관)
2007.5.11~12	교회개혁 희망네트워크 전국포럼 개최(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2007.11.8	교회재정운영 규정 발표 기자회견(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2007.11.8	2008 재정세미나 개최(바른교회아카데미 주관)
2008.4.22	교회재정운영 규정에 관한 공청회 진행(기윤실 주관)
2008.6	교회재정운영 규정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중(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 활동 계획

연 구 *study*

신학적 모색: 신학위원회 구성

- 신학자 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모색
- 성경적 기준(원칙) 제시
- 교직원 사례비 등 관련 분야 연구 모색, 신학적 토대 마련

재정조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진행

사례연구

- 모범교회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시

실 행 *performance*

개 교회 재정결산서 분석

- 계속적인 개 교회 재정운용 조사를 통해 필요 파악(설문조사, 예·결산 자료 수집 등)

자발적인 세금납부 협조

- 교회의 자발적인 납세문화 독려를 위해 세금 납부 및 신고 절차를 안내
- 웹사이트에 관련 양식 비치
- 신고 절차 가이드 제시
- 1:1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 제공

보 급 *supply*

재정조례 제정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제작내용: 재정원칙 및 재정조례 도입절차, 세금납부 가이드, 관련 자료(서류) 등을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
- 보급대상: 회원교회 및 신청하는 모든 교회

재정담당자 실무 교육

- 연 2회 개최
- 포럼자료집 발간(연간),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유
- 관련 칼럼 연재

강사 지원

- 신청교회 방문 교육

지 원 *support*

개교회 재정운영 컨설팅

- 1:1 상담을 통해 개 교회 특성에 맞춘 운영 컨설팅 제공
- 재정운용관련 실무 지원

상담센터 운영

- 재정관련 질의에 대해 상시적인 상담센터 운영
- 문의: TEL. 02-741-2793, FAX. 02-741-2794, E-mail. happytax@cfnet.kr

사이버 소통 공간 마련: 웹사이트 운영

- 재정운용관련 데이터 수집 및 구축
- 관심자간의 인적 네트워킹 마련
- 상담문의 대처
- 동영상 강의 제공
- 웹사이트 주소: www.cfnet.kr

○ 함께 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병들어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2002년 11월 창립된 기독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내의 구조적인 모순을 연구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구조개혁운동), 교회 상담과 교계문제에 관한 이슈파이팅(현안대처 운동), 성도 안에 자리잡은 왜곡된 가치관과 의식을 교육하는 일과 개인·교회들 간의 네트워킹(협력지원운동)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43-2번지 4층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www.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바른교회는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2004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교회 재정 투명성 세미나에 이어 올해도 교회재정세미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10-8번지 청어람, 바른교회아카데미

전화, 02- 777-1333 **팩스**, 02-319-1103

홈페이지, www.goodchurch.re.kr **이메일**, gcacademy@hanmail.net

한빛누리는 이 땅의 변혁가들을 함께 세워가는 전략발전소입니다. (재)한빛누리는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선교 재단으로서, 기독인들의 변화와 각성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하려는 전략적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공익적이고 신뢰받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공신력 있는 운영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서광빌딩 709호

전화, 02- 924-0204 **팩스**, 02-924-0243

홈페이지, www.brightfoundation.org **이메일**, brightfd@gmail.com